

시행일:2019.05.28. 입력자:장다결 확인자:원대희

## 공학컨설팅센터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공학컨설팅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소재)**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연구소의 목적)** 본 센터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본 교 교원들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학교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리드한다.

**제4조(센터의 사업)**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공학컨설팅센터 사업 수행
- ②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연구
- ③중소기업의 애로기술개발에 적합한 기술전문가 발굴
- ④애로기술과 기술전문가를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매칭시스템 개발 및 upgrade
- ⑤유사 사업 수주
- ⑥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 사업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5조(기구)** 본 센터에는 센터장, 부센터장, 자문위원회, 운영위원회, 평가위원회를 둔다. 각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 등 제반 사업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.

**제6조(센터장)** ①센터장은 본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가천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.

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부센터장)** ①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한다.

②부센터장은 센터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③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①센터의 운영 방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②운영위원으로는 센터장, 부센터장은 당연직으로 선임되며, 필요시 자문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.

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자문위원회)** ①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적, 사회적 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코디네이터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매 회계연도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평가위원회)** ①본 센터는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평가위원회의 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

로 한다.

③평가위원회의 장은 교내외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초빙하여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한다.

④평가위원은 매 평가마다 선정되며, 평가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.

### 제 3 장 재 정

**제11조(재정)** ①본 센터의 재정은 정부지원금, 교비 지원금, 연구용역수입, 기타외부지원금 및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본 센터의 재정은 운영비, 평가비, 개발비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③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모든 연구용역 수주 시 운영세칙에 정해진 기준과 비율에 따라 센터의 운영비로 추렴한다.

**제12조(회계연도)**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일치한다.

### 제 4 장 보 칙

**제13조(운영세칙)**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5-1-54~4 제5편 부설연구기관